

의안번호	제 61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2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이숙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
----------	----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2일

발 의 자: 이숙애 · 서동학 · 임기중
박성원 · 이의영 · 김영주
황규철 의원

1. 제안이유

그동안 학교운동부와 관련하여 운동에만 치중된 획일적이고 비자율적인 훈련과 학교운동부 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와 비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었음.

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 시행(안 제4조)
- 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안 제5조)
- 마.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안 제6조)
- 바.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 및 연수(안 제7조)
- 사. 도핑방지 교육(안 제8조)
- 아.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조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체육담당(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9. 1. ~ 2018. 9. 20.(20일간, 특이의견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을 충청북도 교육청 학교체육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③ 운영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학습권 보장)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보충학습,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의 교육적 지원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호)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도핑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 학교운동부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가 될 수 있는 학교 운동부 운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2. 비용 발생 요인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연수비

3. 관련조문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18년 강사 인건비 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연간 연수비 추계		연도별 연수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 강사비 및 운영비	4,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가. 강사비 300,000원×2회=	2,4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400,000
나. 운영비 200,000원×2회=	1,6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체육보건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보통교부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세 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강사비 및 운영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재원 조달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